

□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~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,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(최대 960만원) 지원하는 사업

□ 지원 대상

○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*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

*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

- 다만, 성장유망업종, 지식서비스·지역주력산업 기업, 미래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

○ (청년)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~34세 청년

- 다만,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, ▲고졸 이하 학력, ▲고용 촉진장려금 대상, ▲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, ▲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, ▲보호종료아동, ▲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

□ 지원 요건

○ (정규직 채용)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

○ (최소고용유지기간)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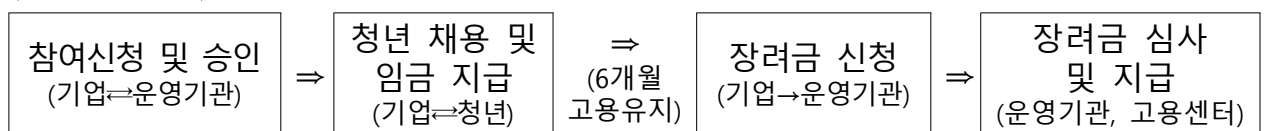
○ (기타) 감원 방지, 최저임금 준수,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

□ 지원 내용

○ (지원 수준)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, 연 최대 960만원

○ (지원 한도)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*의 50%(비수도권 100%), 최대 30명

○ (지원 절차)



○ (참여 신청) 사업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운영기관 (창원상공회의소)을 지정한 후, 참여 신청

○ (문의처) 창원상공회의소 산업인력지원팀 (☎055-210-3093)



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
월 80만원 × 최대 12개월 지원

 **지원대상**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
* 단, 성장유망업종, 미래유망기업,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

 **지원요건**

- ①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~34세 이하 청년
* 고졸 이하 학력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6개월 미만도 가능
- ② 정규직 채용, 6개월 이상 고용유지
- ③ 주 30시간 이상 근로,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

 **신청방법**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.work.go.kr/youthjob 에서
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(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)

 고용노동부